

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3. 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2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5차 행정위원회(2018. 3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진정래)

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3개 조례

○ 주요 개정사항

- 우리구 위원회 성비를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개정

- 정비내역

조례명	정비사항	비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	제17조제3항 중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%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” →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	안 제2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 례	제6조제1항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 →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	안 제3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4조제4항제1호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 →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	안 제4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「양성 평등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비와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2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7조제3항 중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 40% 이상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였으며,
 - 안 제3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항제1호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

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하였음
○ 검토결과,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3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우리 구 위원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- 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개정사항

- 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맞지 않는 위원회 구성 성비 개정 (안 제2~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8.1.18. ~ 1.29. / 11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의 성비와 일치하지 않는 우리 구 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%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제1호 중 “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원으로”를 “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(연임을 포함한다)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구성 등) ①、② (생략)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계, 문화·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/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, <u>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40%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④ ~ ⑪ (생략)	제17조(구성 등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</u> ----- ---. ④ ~ ⑪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, <u>그 중 40% 이상을 여성위 원으로 한다.</u> ② ~ ⑤ (생략)	제6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</u> --.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탁운영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 로 하되, <u>그 중 40%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 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 문가 중에서 선정하며, 심사가 끝 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</u> 2. ~ 5. (생략) ⑤ (생략)	제4조(위탁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. 1. ----- ----- <u>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</u> ----- ----- 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